

## 원격수업 운영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정안
<p><b>제4조(운영교과) ①현행</b>                      ②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은 <del>학년도별</del>-전공별 교육과정 편성과목 수의 30% 이내로 개설한다. 단, 교양교육원의 교양교육과정 및 <del>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</del>의 교육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	<p><b>제4조(운영교과) ①현행</b>                      ②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은 전공별 교육과정 편성과목 수의 30% 이내로 개설한다. 단, 교양교육원의 교양교육과정, <del>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</del> 및 <del>모집정지전공</del>의 교육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
<p><b>제14조(기타) ①현행</b>                      ②현행                      ③현행                      ④<del>원격수업 교과목의 운영방법에 대한 변경은 관련 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del></p>	<p><b>제14조(기타) ①현행</b>                      ②현행                      ③현행                      ④<del>삭제</del></p>
<p><b>제15조(준용)</b>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, <del>학칙사행세칙</del> 및 상위 관련법령 기준에 <del>따른다.</del></p>	<p><b>제15조(준용)</b>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상위 관련법령 기준을 <del>준용한다.</del></p>